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99 회 임 시 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3. 9.

박 종 길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박종길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구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조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1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3103

발의연월일 : 2023. 9. 1.

발 의 자 : 박종길, 이진환, 김정희 정창근, 이선주, 박정환 서보영

1. 제안이유

○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구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안 제1조)

나.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라. 구청장의 조치 의무에 대하여 명시(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비용추계 : 비대상

붙임1 **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하며, 상임위원회 의결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된 예비비부터 적용한다.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